조합원 분양신청 공고

비산초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안양시 고시 제2019-31호)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비산초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게는 본 공고로서 통지를 갈음합니다.

- 아 래 -

1. 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 (안양시 고시 제2019-31호 참조)

① 사업시행자 : 비산초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② 건축계획 : 공동주택 33개동 총 2,60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③ 건축연면적 및 용적률 : 357,122.9104㎡ / 286.52%

※지하주차장 추가 계획 등 사업시행인가 변경 절차 진행 중인 바, 건축연면적은 증가될 계획임

2.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①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비산초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②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281-1번지 일원 / 109,862.40㎡

※ 정비계획 변경(안양시 고시 제2019-78호)으로 구역면적이 110,887.40㎡로 변경, 추후 사업시행계획 변경 시 반영

3. 분양신청(철회) 기간 및 장소

① 기간 : 2019년 5월 28일(화)부터 2019년 6월 28일(금)까지, 오전10시~오후6시까지(공휴일 정상근무)
단, 수요일은 오전10시~오후 5시, 일요일은 오후2시 30분부터 오후7시 까지 접수 받음

② 장소 : 분양신청 사무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운곡로 39, 2층 203호(비산동, 뉴타운삼호5차 상가))

4.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① 공동주택

(단위 : ㎡)

구분		타입	세대수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계약면적
1단지	조합원 분양 / 일반 분양	49	51	49.4733	20.5502	70.0235	3.3294	31.5174	104.8703
		59A	294	59.8119	22.6848	82.4967	4.0252	38.1037	124.6255
		59B	498	59.8376	21.7789	81.6165	4.0269	38.1201	123.7635
		74	58	74.0781	22.8799	96.9580	4.9852	47.1921	149.1353
		84A	279	84.9165	25.4438	110.3603	5.7146	54.0968	170.1718
		84B	190	84.9716	24.6674	109.6390	5.7183	54.1319	169.4892
		109	7	109.8322	38.6864	148.5186	7.3914	69.9696	225.8795
	임대 (소형 주택)	21	54	21.9909	12.2961	34.2870	1.4799	14.0095	49.7764
		39	60	39.2380	20.7386	59.9766	2.6406	24.9969	87.6141
		59A	78	59.8119	22.6848	82.4967	4.0252	38.1037	124.6255
	소계		1,569	103,015.7412	35,624.4643	138,640.2055	6,932.6499	65,627.0769	211,199.9323
2단지	조합원 분양 / 일반 분양	49	50	49.4733	20.1039	69.5772	2.7692	31.3860	103.7324
		59A	198	59.8119	22.8264	82.6383	3.3478	37.9449	123.9310
		59B	249	59.8376	21.9206	81.7582	3.3493	37.9612	123.0687
		74	52	74.0781	23.2874	97.3655	4.1464	46.9954	148.5073
		84A	218	84.9165	25.6331	110.5496	4.7530	53.8713	169.1740
		84B	134	84.9716	24.8568	109.8284	4.7561	53.9063	168.4908
		109	5	109.8322	38.4135	148.2457	6.1476	69.6779	224.0712
	임대 (소형 주택)	21	40	21.9909	13.7263	35.7172	1.2309	13.9511	50.8992
		39	40	39.2380	23.2905	62.5285	2.1963	24.8927	89.6175
		59A	52	59.8119	22.8264	82.6383	3.3478	37.9449	123.9310
	소계		1,038	69,074.5720	23,972.5476	93,047.1196	3,866.3085	43,821.1279	140,734.5560
합계(1+2단지)			2,607	172,090.3132	59,597.0119	231,687.3251	10,798.9584	109,448.2048	351,934.4883

※ 상기 타입은 전용면적 기준임

②근린생활시설

구 분	층수	지상층(㎡)	지하층(㎡)	비 고
근린생활시설(1단지)	지하2층		3,628.5520	분양면적 (전용+공용)
근린생활시설(2단지)	지하2층	-	1,559.8701	
합 계			**5,188.4221**	

※ 상기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내역은 사업시행인가고시(2019.02.28)기준이며, 추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동될 경우 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면적은 분양면적(전용+공용)을 기재하였음.
※ 상가는 분양신청 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에 따라 세부 계획이 결정되며, 현재는 전체 면적만 기재함.

5. 분양신청자격

○ 분양신청 대상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조합정관 제9조에 해당하는 자

6. 분양신청방법

① 조합에서 지정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분양사무실에 제출 (별도로 통지한 분양신청 안내책자 참조)

② 제출방법

1) 방문제출 : 분양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2) 우편제출 : 분양신청 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합사무실 발송

7.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별도 통보)

8.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별도 통보)

9. 조합원 명의 (권리내역) 변경 신고방법

① 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에 그 변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조합원은 조합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은 요구서류에 대한 용도와 수량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③ 명의(권리내역) 변동 시 반드시 조합사무실로 신고하시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④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등)를 첨부하여 조합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10. 분양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함

11. 철거 및 이주 예정일

○ 이주 예정일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별도 공고·통지할 예정이며, 철거 예정일은 이주 완료 후 조합에서 별도로 정하여 통지할 예정임

12. 기타사항

○ 분양신청 연장에 대한 사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조합에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 기간을 2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분양신청을 연장하는 경우 별도 통지할 계획임

○ 자세한 사항은 『조합원 분양신청 안내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신청 사무실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운곡로 39, 2층(비산동, 뉴타운삼호5차 상가)
- 조합 사무실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운곡로 23, 3층(비산동)
- 문의전화(분양사무실) : 031)383-7718, 384-7718
- 조합사무실 : ☎031)382-7718 / FAX. 031)382-7719

2019. 05. 28.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직인생략]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 제2019-07호

조합원 분양신청 (연장)공고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안양시 고시 제2019-31호)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게는 본 공고로서 통지를 갈음합니다.

- 아 래 -

1. 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 (안양시 고시 제2019-31호 참조)

① 사업시행자 :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정비사업조합

② 건축계획 : 공동주택 33개동 총 2,60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③ 건축연면적 및 용적률 : 357,122.9104㎡ / 286.52%

※지하주차장 추가 계획 등 사업시행인가 변경 절차 진행 중인 바, 건축연면적은 증가될 계획임

2.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①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재개발사업 /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

②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281-1번지 일원 / 109,862.40㎡

※ 정비계획 변경(안양시 고시 제2019-78호)으로 구역면적이 110,887.40㎡로 변경, 추후 사업시행계획 변경 시 반영

3. 분양신청(철회) 기간 및 장소

① 기간 : 2019년 6월 29일(토)부터 2019년 7월 7일(일)까지, 오전10시~오후6시까지(공휴일 정상근무)
단, 수요일은 오전10시~오후 5시, 일요일은 오후2시 30분부터 오후7시 까지 접수 받음

② 장소 : 분양신청 사무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운곡로 39, 2층 203호(비산동, 뉴타운삼호5차 상가))

4.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① 공동주택

(단위 : ㎡)

구분		타입	세대수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계약면적
1단지	조합원 분양 / 일반 분양	49	51	49.4733	20.5502	70.0235	3.3294	31.5174	104.8703
		59A	294	59.8119	22.6848	82.4967	4.0252	38.1037	124.6255
		59B	498	59.8376	21.7789	81.6165	4.0269	38.1201	123.7635
		74	58	74.0781	22.8799	96.9580	4.9852	47.1921	149.1353
		84A	279	84.9165	25.4438	110.3603	5.7146	54.0968	170.1718
		84B	190	84.9716	24.6674	109.6390	5.7183	54.1319	169.4892
		109	7	109.8322	38.6864	148.5186	7.3914	69.9696	225.8795
	임대 (소형 주택)	21	54	21.9909	12.2961	34.2870	1.4799	14.0095	49.7764
		39	60	39.2380	20.7386	59.9766	2.6406	24.9969	87.6141
		59A	78	59.8119	22.6848	82.4967	4.0252	38.1037	124.6255
	소계		1,569	103,015.7412	35,624.4643	138,640.2055	6,932.6499	65,627.0769	211,199.9323
2단지	조합원 분양 / 일반 분양	49	50	49.4733	20.1039	69.5772	2.7692	31.3860	103.7324
		59A	198	59.8119	22.8264	82.6383	3.3478	37.9449	123.9310
		59B	249	59.8376	21.9206	81.7582	3.3493	37.9612	123.0687
		74	52	74.0781	23.2874	97.3655	4.1464	46.9954	148.5073
		84A	218	84.9165	25.6331	110.5496	4.7530	53.8713	169.1740
		84B	134	84.9716	24.8568	109.8284	4.7561	53.9063	168.4908
		109	5	109.8322	38.4135	148.2457	6.1476	69.6779	224.0712
	임대 (소형 주택)	21	40	21.9909	13.7263	35.7172	1.2309	13.9511	50.8992
		39	40	39.2380	23.2905	62.5285	2.1963	24.8927	89.6175
		59A	52	59.8119	22.8264	82.6383	3.3478	37.9449	123.9310
	소계		1,038	69,074.5720	23,972.5476	93,047.1196	3,866.3085	43,821.1279	140,734.5560
합계(1+2단지)			2,607	172,090.3132	59,597.0119	231,687.3251	10,798.9584	109,448.2048	351,934.4883

※ 상기 타입은 전용면적 기준임

②근린생활시설

구 분	층수	지상층(㎡)	지하층(㎡)	비 고
근린생활시설(1단지)	지하2층		3,628.5520	분양면적 (전용+공용)
근린생활시설(2단지)	지하2층	-	1,559.8701	
합 계			**5,188.4221**	

※ 상기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내역은 사업시행인가고시(2019.02.28)기준이며, 추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동될 경우 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면적은 분양면적(전용+공용)을 기재하였음.
※ 상가는 분양신청 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에 따라 세부 계획이 결정되며, 현재는 전체 면적만 기재함.

5. 분양신청자격

○ 분양신청 대상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조합정관 제9조에 해당하는 자

6. 분양신청방법

① 조합에서 지정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분양사무실에 제출 (별도로 통지한 분양신청 안내책자 참조)

② 제출방법

1) 방문제출 : 분양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2) 우편제출 : 분양신청 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합사무실 발송

7.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별도 통보)

8.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별도 통보)

9. 조합원 명의 (권리내역) 변경 신고방법

① 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에 그 변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조합원은 조합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은 요구서류에 대한 용도와 수량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③ 명의(권리내역) 변동 시 반드시 조합사무실로 신고하시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④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등)를 첨부하여 조합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10. 분양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함

11. 철거 및 이주 예정일

○ 이주 예정일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별도 공고·통지할 예정이며, 철거 예정일은 이주 완료 후 조합에서 별도로 정하여 통지할 예정임

12. 기타사항

○ 분양신청 연장에 대한 사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조합에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 기간을 2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분양신청을 연장하는 경우 별도 통지할 계획임

○ 자세한 사항은 『조합원 분양신청 안내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신청 사무실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운곡로 39, 2층(비산동, 뉴타운삼호5차 상가)
- 조합 사무실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운곡로 23, 3층(비산동)
- 문의전화(분양사무실) : 031)383-7718, 384-7718
- 조합사무실 : ☎031)382-7718 / FAX. 031)382-7719

2019. 05. 28.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직인생략]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분양 사무소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아파트 분양계약 안내문



- 계약 기간 : 2021년 5월 18일(화) ~ 2021년 5월 28일(금) (주말 포함 11일간)
- 계약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방문시간 예약 후 방문)
- 계약 장소 :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0-1번지 안양학운공원 그린존
  (안양프라우드힐 견본주택)

☎ 031-388-2356 (상담가능시간 : 10:00~18:00)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정비사업조합

1. 조합원 분양계약 일정

○ 기　간 : **2021년 5월 18일(화) ~ 2021년 5월 28일(금) (주말포함 11일)**

○ 시　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 접수 (시간엄수)**

※ 분양계약은 조합원 번호 순으로 우선 진행되므로, 반드시 지정된 계약일자에 맞춰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계약일 외 방문시 계약 불가)

※ **계약시간은 시간당 분양계약 조합원을 20명으로 제한**하오니, 사전에 상담사와 통화 후 방문시간을 확정하여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계약자 본인 외 동반자 1인만 입장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자는 입장 가능)**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일일 계약 인원을 150명 내외로 제한하오니, 반드시 해당 날짜와 사전 방문시간(상담사와 시간 협의)을 확인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체온 37.3도가 넘을 경우

2. 조합원 분양계약 장소

○ 장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0-1번지 안양프라우드힐 견본주택

○ 문　의 : **031-388-2356 (견본주택 분양사무소, 상담가능시간: 10:00~18:00)**

※ 전화상담은 2021년 4월 29일(목)부터 응대 가능합니다.



3. 계약 절차 안내

① 조합원 분담금 내역서 확인 → ② 계약금 납부 → ③ 계약 구비서류 준비 →
④ 계약기간 내 견본주택 방문 → ⑤ 구비서류 확인 → ⑥ 계약서 작성

※ 다음 페이지의 조합원 분양계약 일정표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합원 분양계약 일정표

코로나-19로 1일 입장 조합원을 약15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였으며, 조합원님께서는 방문하시기 전에 분양 사무실로 **방문시간을 예약하신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당 분양계약하는 조합원을 약 20명으로 인원 제한)

No.	계약날짜	조합원번호 (개별통지서 참조)	비고
1	5월 18일 (화)	1 ~ 150	분양 계약은 조합원번호 순으로 우선 진행되므로, 반드시 지정된 계약일자에 맞춰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계약일 외 방문시 계약 불가)** ※ 방문시간은 사전에 분양사무소 상담사와 통화하여 확정 바람
2	5월 19일 (수)	151 ~ 300	
3	5월 20일 (목)	301 ~ 450	
4	5월 21일 (금)	451 ~ 600	
5	5월 22일 (토)	601 ~ 750	
6	5월 23일 (일)	751 ~ 900	
7	5월 24일 (월)	901 ~ 1,050	
8	5월 25일 (화)	1,051 ~ 1,200	
9	5월 26일 (수)	1,201 ~ 1,350	
10	5월 27일 (목)	1,351 ~ 1,500	
11	5월 28일 (금)	1,501 ~ 1,668	

4. 분양계약서 작성 시 구비서류

① 일반 내국인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구 비 서 류</th></tr>
<tr><td colspan="2">공통
서류</td><td>■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조합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용도:아파트 계약용)
■ 인감도장
■ 조합원 분담금 내역서 원본 및 계약금 납입영수증
■ 자금조달계획서
■ 자금조달증빙서류
※ 공동소유자의 경우 공유자 전원이 상기 서류 일체를 구비</td></tr>
<tr><td rowspan="2">추
가</td><td>대리인
계약시</td><td>■ 상기 공통사항 서류 일체
■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조합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별첨서식)
■ 조합원의 인감증명서 2부 (용도: 계약용 1부, 계약위임용 1부)
※ 공동소유자의 경우 공유를 대표하여 계약 체결하는 경우 공유자 전원의 위임장 제출</td></tr>
<tr><td>미성년자
계약시</td><td>■ 상기 공통사항 서류 일체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1부 (용도:아파트 계약용)
■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계약서에 날인)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법정대리인 증빙용)
※ 미성년자 명의로 계약시 법정대리인과 함께 계약 체결
※ 미성년자 조합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본인, 보호자 동반하여 해당 공공기관(주민센터 및 시청, 구청 등)에 신고 후 발급 가능
※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학생증, 의료보험증, 기본증명서로 증명</td></tr>
<tr><td colspan="3">※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일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공유소유자인 경우 전원이 공통사항 서류를 준비하시어 계약해 주셔야 하며, 공유자 중 1인만 참석하여 계약하시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위임장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대표자가 오는 경우도 동일함.)</td></tr>
</table>

② 외국인 및 재외동포

구분		구 비 서 류
영주권자	주민등록 존치시	■ 내국인과 동일
	주민등록 말소시	■ 주소지 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재외국민등록증 대체가능) 1부 ■ 여권사본 ■ 외국인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 서명으로 할 경우 서명날인증명서(공증 必) 1부
	대리인 계약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기입 必 → 아파트 계약 위임용) 1부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위임장(조합원 인감날인 또는 서명, 관공서 증명 또는 공증 必) ※ 본인 이외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포함)로 간주
시민권자 및 외국인	거주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1부 ■ 서명으로 할 경우 서명날인증명서 (공증 必) 1부 ※ 각 증명서별 공증본 및 번역본(공증 必 첨부)
	비거주 외국인	■ 시민권 사본증 ■ 거주사실증명서 1부(본국=국적취득국 관공서에서 발급) 또는 주소 증명서 (본국의 공증기관에서 공증) ■ 서명날인증명서 (공증 必) 1부 ※ 각 증명서별 공증본 및 번역본(공증 必 첨부)
	대리인 계약시	■ 계약자 서명날인증명서 (공증 必) 1부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위임장(조합원 인감날인 또는 서명(관공서 증명 또는 공증 必)) ■ 계약자 도장 ※ 본인 이외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포함)로 간주함

③ 법인

구분	구 비 서 류
대표자 계약시	■ 법인 등기부 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법인 인감도장 ■ 법인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계약시	■ 법인 등기부 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 법인 사업자등록증 ■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 인감날인) ■ 대리인 신분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일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위 임 장

PRUGIO

대리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관 계	
	용 도	조합원 아파트 계약 위임용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상기 용도 행위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며 계약 구비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이 발급하여 발생하는 문제 및 귀사의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21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전 화 번 호 :

※ 붙임서류

1.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1부, 인감증명서(용도기재 : 아파트 계약 위임용) 1부
2.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3. 해외 체류자 해외공관 확인 위임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계약 위임 및 대리인 확인
수집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용 및 보유기간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보관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회사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으로 보유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위임받은 대리인의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성명 : (인/서명)

비산초교 주변지구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귀중